

## 일본의 제2차 건설산업 구조개선 추진계획



### 1. 서

일본의 건설성이 '88년도에 책정하여 시행하여온 건설업의 제1차구조개선추진계획이 '91년도에 종료되었다. 이에따라 '92년도부터 3년간에 실시될 제2차구조개선추진계획의 책정작업을 추진하였던바, 이것이 종합정리됨으로써 지난 3월30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본계획의 부제는「사람을 소중히 하는 건설산업을 목표로 하여」로서 고용근로조건의 개선과 인재의 확보·육성을 가장 중요한 중점과제로 하였다. 구조개선추진계획은 건설산업이 향후 국민의 욕구에 정확하게 부응하여, 보다 양질의 건설생산물을 제공하고 활

#### 본 계획의 부제는 고용근로자의 개선과 인재의 확보·육성을 가장 중요한 중점과제로 하였다.

력과 매력이 넘친 산업으로서 성장하여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건설행정면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책을 1기 예 3년의 기간을 정하여 추진하여야 할 사업 등을 제시한 행동계획이다.

건설업의 구조개선이라는 것은 건설산업이 갖고 있는 옥외, 이동, 조립, 주문생산이라는 생산특성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시장구조(불량·부적격업자의 혼입, 부적절한 공동기업체의 운영 등), 시장행동(종합공사업자와 전문공사업자간 계약관계의 편무성과 필요이상으로 재하도급하는 시공형태 등원·하도급관계의 불합리성), 시장성과(고

**구조개선에 대한 노력을 태만히 한다면 노동시장에 있어서의 일손부족이 전문공사업자를 중심으로 한 기능근로자의 확보를 곤란하게 할 것이다.**

용근로조건과 생산성 면에서의 낙후) 등의 문제점을 극복하여 나가기 위한 각종 대책이다.

제1차 구조개선추진계획은 ① 불량·부적격업자의 배제 ② 건설생산시스템에 있어서의 새로운 rule의 제정 ③ 생산성의 향상 ④ 젊은층 근로자의 확보 등 네 가지의 과제를 중점과제로 하고서 관련행정기관과 업계의 협력에 의하여 시행하여 나감으로써 상응한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노동시장의 변화는 '93년을 정점으로 젊은층인구(18~22세)의 감소로 또한 '95년에 이르러서는 생산연령 인구(15~64세)의 감소 등이 노동집약적 성격이 강한 건설산업의 구조개선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써 앞으로도 근로개선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인식되고 있다.

만일 구조개선에 대한 노력을 태만히 한다면 노동시장에 있어서의 일손부족이 전문공사업자를 중심으로 한 기능근로자의 확보를 곤란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시공형태의 종총화(재하도급화)를 초래하여 불량·부적격업자를 유발하고, 생산성향상의 저해요인으로 될 우려가 있음과 동시에 건설산업의 저생산성이 고용근로조건의 개선을 지체시켜 일손확보에 관한 한 건설산업은 특히 불리하게 될 것이다.

제2차 구조개선추진계획은 제1차계획의 중점과제인 ① 고용근로조건의 개선과 인재의 확보·육성 ② 생산성의 향상 ③ 건설생산시스템에 있어서의 합리화의 추진 ④ 불량·부적격업자의 배제라는 4개과제에 추가하여 새로운 시공체제의 복잡화와 시공기술의 고도화 및 시공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안전확보대책의 강화 그리고 건설산업의 사회적 사명에 대한 홍보와 사회에 공헌하는 건설산업의 실현에 의한 건설산업에 대한 이해의 증진이라는 2개과제를 추가하여 6개 중점과제를 설정하고, 이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13개의 추진사업을 제시하였다.

이들 계획을 확실하게 추진하기 위하여서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충분히 검토하여 착실

한 시책의 전개를 도모하고, 동 계획을 다루기 위하여 건설성의 건설경제국 내에 구조개선추진회의를 설치함과 동시에 발주자에 대하여 협력요청을 하는 것과 각 都·道·府·縣과의 유대강화 등을 중시하였다. 특히 제1차 계획에서는 都·道·府·縣의 참여가 대부분 기술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각 都·道·府·縣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구조개선사업에 참여하여 왔으며, 제2차계획의 추진시에도 조직의 신설과 구조개선을 위한 예산조치 등에서 기대되고 있다.

## 2. 제 2차건설산업의 구조개선추진 계획(사람을 소중히 하는 건설산업을 목표로 하여)

### 가. 개요

#### 1) 기본방침

'88년도부터 3개년에 걸친 건설산업의 구조개선에 대한 행동계획을 제시한 제1차구조개선 추진계획은 지금까지 각 기업, 업계의 단체, (재단법인) 건설업진흥기금, 관련행정기관 등 각분야의 노력에 힘입어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제1차계획에 있어 소기의 목적이 아직 충분히 달성되어 있지 않은데다, 기간건설기능근로자를 중심으로 심각한 부족문제를 초기에 극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앞으로 국제화의 진전에 대응하여 경쟁력이 있는 기업체질로 만들어야 할 것이며 더욱이 대·내외의 건설산업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즉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더한 층의 구조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 2) 구조개선추진계획의 기본목표

건설산업은 주문생산, 옥외에서의 이동·조립산업이기 때문에 기후 등의 외적인 조건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점, 계절에 따라서 공사량이 큰 변동을 보이고 있는 점, 종합공사업자와 전문공사업자와의 분업관계를 축으로 그때마다 조직된 다수의 건설업자와 건설근로자가 하나의 생산현장에서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것 등을 배경으로 하여 볼 때 고용근로조건, 생산성면에서 낙후되어 있다.

**젊은층 인구와  
생산연령 인구  
가 각각 '93년  
과 '95년을 정  
점으로 감소가  
예상되고 있는  
것을 볼때, 산  
업간의 인재확  
보경쟁이 더욱  
격화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  
다.**

또한 종합공사업자와 전문공사업자와의 사이에 편무적인 관계 등의 불합리한 관계와 필요이상으로 중중화한 시공형태가 눈에 띠고 있는 등 계속하여 해결하여야 할 많은 문제가 있다.

이 때문에 구조개선추진계획의 기본목표로서는 건설산업의 고용근로조건의 개선과 인재의 확보·육성, 생산성의 향상, 종합공사업자와 전문공사업자 등을 중심으로 각자가 역할을 분담하면서 협력하여 행하는 건설 생산시스템의 합리화, 불량·부적격업자의 배제가 설정되었다.

### 3) 현상인식

건설산업의 고용근로조건에 관하여서는 개선의 조짐이 보여지고 있다고는 하나, 생산근로자의 임금수준이 타산업에 비하여 낮은 점, 일급, 일급과 월급의 혼합지급방식에 의한 임금 지급형태가 많은 점, 임시고용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뿐 아니라 노무의 제공만에 의한 도급이 많다는 점 등의 문제가 있다. 또한 건설산업의 노동생산성에 대하여서는 최근들어 상승경향을 나타내고 있다고는 하나 제조업에 비하여 계속 저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이것이 건설산업의 고용근로조건의 개선을 지연시키고 있는 하나의 요인으로 되고 있다.

중소건설업을 중심으로 하는 건설기능근로자의 현장이탈에 의하여 인재의 확보가 상당히 곤란하여지고 있다. 건설생산시스템에 대하여서는 종합공사업자와 전문공사업자 간의 대등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건이 충분히 정비되어 있지 않은데다가, 최근들어 전문공사업자의 시공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과 함께 시공형태의 중중화가 진행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하에서 금후에 전술한 바와같이 젊은층인구와 생산연령인구가 각각 '93년과 '95년을 정점으로 감소가 예상되고 있는 것을 볼때, 산업간의 인재확보경쟁이 더욱 격화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으며, 노동력 인구를 둘러싼 시장조건의 변화가 노동집약적인 성격이 강한 건설산업 그 자체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즉, 구조개선에의 더한층의 노력을 태만히 한다면 노동시장에 있어서의 일손부족이 직접적으로는 전문공사업자를 중심으로 한 건설기능근로자의 확보를 곤란하게 하고 이것이 시공형태의 중중화를 초래하여 생산성 향상의 저해요인으로 될 우려가 있다. 동시에 건설산업의 낮은 생산성이 고용근로조건의 개선을 지연시키고 있다. 따라서 인재의 확보경쟁에 있어서 건설산업의 입장은 더욱 불리하게 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결과로, 건설산업은 빌주자 및 일반국민의 다양화·고도화하는 욕구에 정확하게 부응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다. 또한 건설공사의 안전확보와 건설생산물의 품질보증면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한편, 빌주단가 및 공기의 적정화와 빌주 규모의 적정화 및 공사빌주의 평준화와 기계화·공장생산화 등의 성력화공법(자동화·무인화·기계화를 촉진시켜 일손을 더는 공법을 말함)의 적극적인 도입에 대하여서는 구조개선에서도 크게 기여하기 때문에 빌주자 전체의 이해와 협력을 더한층 얻어야 할 것이다.

### 4) 중점과제의 설정

제2차 구조개선추진계획은 금후 사회자본 정비의 필요성 등 때문에 건설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에 노동력인구가 증가에서 감소로 전환하는 과도기에 있어서의 행동계획이다. 현재의 건설산업을 둘러싼 제반과제에 상응해 나가기 위하여 사람을 중요시하는 건설산업을 실현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후에 ① 고용근로조건을 개선하고 필요한 인재의 확보와 육성을 도모할 것 ② 경영기반의 강화, 성력화투자의 촉진 등에 의거하여 생산성의 향상을 도모할 것 ③ 종합공사업자와 전문공사업자가 각자의 역할을 정확하게 담당함으로써 건설생산시스템에 있어서의 합리화를 추진할 것 ④ 건설업법이 정한 불량·부적격업자의 배제의 틀을 견지함으로써 규모에 상관없이 기술과

**건설기능근로자는 건설생산의 근간을 지탱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그 원활한 확보·육성은 건설생산의 앞으로 나갈 바를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경영에서 우수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시장환경의 정비를 촉진할 것 ⑤ 건설산업에 있어서의 안전확보 대책을 강화할 것 ⑥ 건설산업에 대한 이해의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중점과제로 설정하였다.

### 5) 추진체제상의 배려사항

첫번째로, 제2차구조개선추진계획은 상술한 바와같은 기본적인 방침에 입각하여 계획기간중에 중점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사업을 설정하여 사업목적과 사업내용 등을 명확히 한다. 동시에 (재)건설업진흥기금 내에 설치되어 있는 구조개선센터를 중심으로 한 구조개선사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보증사업회사의 출연에 의한 구조개선기금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

두번째로 건설산업은 '91년 3월현재 약 51만여 업자가 담당하고 있으며 이중 98%가 都·道·府·県知事許可業者이므로 都·道·府·県의 참여가 구조개선에 있어 성패의 관건이 되고 있다., 이때문에 都·道·府·県이 구조개선의 이념과 방침을 충분하게 이해한 뒤에 계획적이면서 더한층 적절한 시책의 전개를 도모함으로써 都·道·府·県과의 연계를 강화함과 동시에 그 추진체제의 정비를 촉진도록 노력한다.

세번째로 구조개선은 각 기업, 업계단체, (재)건설업진흥기금, 관계행정기관 등이 힘을 합하여 추진하는 것이며 이 계획이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구조개선의 추진을 위한 회의를 활용하도록 한다. 또한,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발주자에 대하여 구조개선에 대한 협력을 요청한다.

## 나. 중점과제와 이에 대응한 추진사업

### 1) 고용근로조건개선과 인재의 확보·육성

건설기능근로자는 건설생산의 근간을 지탱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그 원활한 확보·육성은 건설생산의 앞으로의 나갈 바를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금후 노

동력공급의 제약이 점차 강화되어가고 있는데, 이른바 외국인 단순근로자의 유입은 인정하지 않는 기본방침을 견지하면서 일본내에서 의욕이 있는 기간건설근로자를 원활하게 확보·육성하여 나가기 위하여서는 고용근로조건의 개선대책과 건설산업에의 취업촉진을 위한 활동을 비롯한 인재의 확보·육성대책과를 종합적으로 충실히 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연간 총 근로시간 1,800시간의 실현을 목표로 하면서 '91년도에 책정한 건설산업에 있어서의 근로시간의 단축추진요강에 의거, 시간의 단축추진에 대한 대응을 정확하게 행하도록 한다. 또한, 임금대장의 정비추진운동 등의 실시 및 여성의 취업을 염두에 둔 현장의 환경개선에 노력한다. 동시에 직접 고용화, 상용화, 월급제에의 이행을 촉진하는 등 불명확하면서 불안정한 고용형태의 개선을 도모하도록 한다. 특히, 건설산업이 사람을 소중히 하는 산업인 점을 명확하게 하면서 복지와 후생을 포함한 고용근로조건을 개선하는 기업이 기업간 경쟁상 불리하게 됨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용근로조건의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기업을 평가하는 제도를 정비하도록 한다.

또한 젊은층건설근로자취업촉진협의회의 전국적인 전개를 촉진함과 동시에 건설산업에의 취업희망자가 스스로 나와서 취업하고 싶다고 생각할 정도로 앞으로의 생활설계에 분명한 전망을 가질수 있도록, 평생의 각 단계(life cycle)에 상응한 취득자격 및 획득소득의 전망과 체계적인 인재육성의 방안을 제시한 인재의 육성프로그램을 작성하도록 한다. 특히 전문공사업자의 책임시공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기술과 기능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연수의 실시, 민간자격의 창설을 촉진한다. 이와함께 인재의 육성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건설산업에의 취업이 촉진되도록 하고, 업계단체 등에 의한 기술과 기능의 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강좌의 설치 등 교육기관과의 유대강화 및 기간건설

**기간 건설기능  
근로자의 확보  
와 육성에 대  
하여서는 전문  
공사업자만이  
아니고 종합공  
사업자를 포함  
한 업계 전체  
의 과제로서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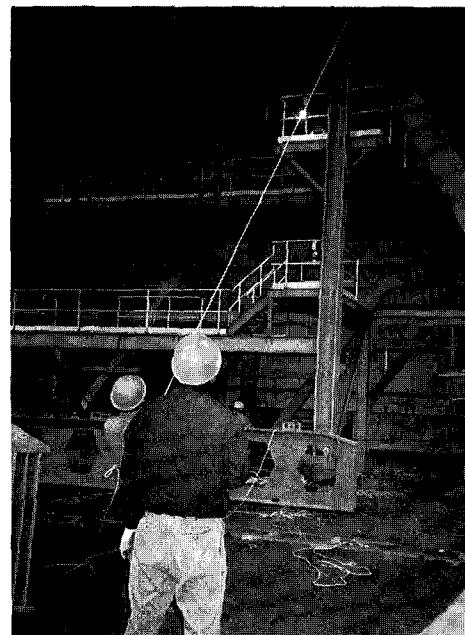
기능근로자를 사회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를 창설한다.

## 2) 생산성의 향상

금후 노동력공급의 제약이 차츰 강화되어 나가는 가운데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건설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서는 ① 경영기반의 강화 ② 공정관리 등의 합리화 ③ 품질의 향상과 성력화를 목표로 한 건설로보트의 개발·보급에 의한 시공의 기계화 및 부자재의 규격화·표준화를 전제로 한 공장생산화의 추진 ④ 건설산업의 정보네트워크의 정비 등에 의하여 경영관리, 기술, 정보 등 각종 경영자원의 축적을 통하여 기업의 체질을 강화하고 건설산업의 생산성의 향상, 원가절감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첫번째로 경영기반의 강화에 대하여서는 건설업자의 자조노력을 지원하면서 업종별 경영개선지침의 작성을 비롯하여 재무진단·지도 및 경영총에 대한 연수의 충실·강화를 도모하는 것 외에 OA기기의 도입·활용의 촉진, 사업협동조합 등을 활용하도록 한다.

둘째로 공정관리 등의 합리화에 대하여서는 효율적인 시공을 촉진하기 위한 관리의



기본방침을 제시한 안내서(manual)를 작성하도록 한다.

세번째로 기계화, 공장생산화에 대하여서는 공동개발 등을 지원하는 한편, 이의 활용·보급을 위하여 세계의 활용, 확충에 노력한다. 또한 우천시에도 작업을 가능하게 하는 전천후형 공사현장의 실현에 노력한다.

네번째로 건설산업의 정보네트워크의 실용화에 대하여서는 (재)건설업진흥기금 내의 건설산업 정보화추진센터를 중심으로 각종 데이터의 교환에 있어 표준화 등에 의한 거래데이터의 온·라인교환의 보급을 도모함과 동시에 지역에 있어서의 정보화를 추진하도록 한다.

## 3) 건설생산시스템에 있어서의 합리화의 추진

건설생산은 종합공사업자, 전문공사업자, 설계자, 자재메이커 등의 분업관계에 의하여 성립하고 있다. 이같은 분업관계를 전제로 관계업자간의 계약체결, 가격결정, 인재의 육성 등의 면에서 적정한 룰(rule)을 확립하고 합리적인 분업관계의 형성을 도모하지 않으면 효율적인 건설생산시스템의 실현은 불가능하다. 특히 현재 극심한 부족현상을 보이고 있는 기간건설기능근로자는 직접적으로 전문공사업자가 고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만큼 기간건설기능근로자의 확보와 육성에 대하여서는 전문공사업자만이 아니고 종합공사업자를 포함한 업계전체의 과제로서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① 계약체결의 적정화를 위한 기본적인 룰을 정한 계약체결적정화지침의 책정, 그 전제인 책임시공범위의 명확화 ② 시공체제를 파악하고 불필요한 중증화를 회피하기 위한 시공체제 대장정비의 촉진 ③ 적정한 평가에 근거한 수주자를 선정하기 위한 종합공사업자에 의한 전문공사업자의 능력평가·선정의 기본적인 룰의 제정 ④ 건설근로자의 고용근로조건의 개선 및 기술·기능의 향상에 관한 분할분담에 관한 룰의 제

**건설사업은 국  
민생활과 산업  
활동의 기반인  
건설생산물의  
공급을 담당하  
는 기간산업이  
며 역사와 후  
세의 평가를  
받을만한 문화  
유산을 창조한  
다.**

정 등을 중앙, 지방의 건설생산시스템합리화추진협의회를 활용하여 행하도록 한다.

#### 4) 불량·부적격업자의 배제

기술과 경영면에서 우수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의 정비를 행하는 것은 구조개선을 추진하여 활력과 매력에 넘친 건설산업을 구축하기 위하여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필요하다. 이 조건정비의 일환으로서 '90년 6월에는 건설업법에 의거하여 지정건설업감리기술자에 대한 자격증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또한 공동기업체의 기본지침에 관하여서는 '88년 5월에 공동기업체운영지침이 책정됨에 따라서 이들의 철저한 시행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불량·부적격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대책을 충실히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지정건설업감리기술자의 자격증제도를 비롯한 건설업법의 기술자제도의 철저한 시행과 공동기업체운영지침의 정착을 도모한다. 이외에 일괄하도급의 금지와 하도급계약에 있어서의 대금지급의 적정화 등에 노력한다. 특히 '92년 3월에 시행된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에 유의하면서 건설산업으로부터 폭력단 배제에 더한층 철저를 기한다.

한편 건설생산물의 품질설정, 품질평가를 자체적으로 행하는 것이 곤란한 민간발주자, 특히 개인발주자와 같은 일반소비자가 보다 양질인 건설생산물을 적정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기업을 정확하게 선택할 수 있는 시장환경을 정비한다. 즉, 품질과 가격 등의 양면에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반소비자에 대하여 건설업자의 공사실적을 비롯하여 건설생산물의 품질 및 가격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한다. 이외에 건설공사에 관한 분쟁의 미연방지 및 원활한 해결을 위한 계발을 행하도록 한다.

#### 5) 건설산업의 안전확보대책의 강화

건설현장에 있어서의 안전의 확보는 건설공사를 실시하는 사업자가 큰 책임을 안고 있다. 가령 건설산업에 있어서 최근의 근로

재해가 금후에도 계속하여 발생된다면 인명의 존중과 근로자복지의 차원에서 간과할 수 없는 문제로서 건설산업의 사회적인 책임의 추궁과 더 나아가서는 건설산업이 건전한 발전을 이룩하는데 큰 장애요인으로 될 것이다. 구조개선에서 기본적인 사항으로 이미 안전문제가 포함되어 있는 바, 중증화에 의한 시공체제의 복잡화, 기계화공법의 도입에 의한 시공기술의 고도화, 건설기능근로자의 고령화에 의한 시공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한 신속한 대응을 도모함으로써 종래이상으로 건설산업에 있어서의 안전확보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종합공사업자에 의한 우량전문공사업자의 평가, 선정을 지도하고 또한, 종합공사업자와 전문공사업자간 계약의 적정화를 도모한다. 이외에 시공체제대장의 정비 등에 의하여 주임기술자 등에 대한 배치의 철저, 건설기능근로자에 대한 교육비디오 등을 활용한 안전교육의 강화, 기술자의 육성과 기술력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기술자에 대한 강습을 실시하도록 한다.

#### 6) 건설산업에 대한 이해의 증진

건설산업은 국민생활과 산업활동의 기반이며 전문생산물의 공급을 담당하는 기간산업이며 역사와 후세의 평가를 받을만한 문화유산을 창조한다라는 큰 사회적 사명을 갖고 있다. 그러나 건설산업이 전근대적 측면이 강조되기 쉬운점이 있는등 나쁜 이미지가 자주 지적되고 있으므로 건설산업에 대한 사회 일반의 바른 이해를 더한층 추구하여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고용근로조건에 대한 개선노력을 계속하는 한편, 각종 기회를 통하여 보도매체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건설산업이 담당하고 있는 사회적 사명을 국민의 각 계각층에게 널리 홍보하고 건설산업에 대한 일반국민의 이해가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또한 건설산업은 발주자의 요구에 부응한 건설생산물을 생산한다고 하는 본래의 역할

을 맡는 것만이 아니고 일본이 국제적인 지위를 향상시키고 있는 가운데에서 국제경제 사회에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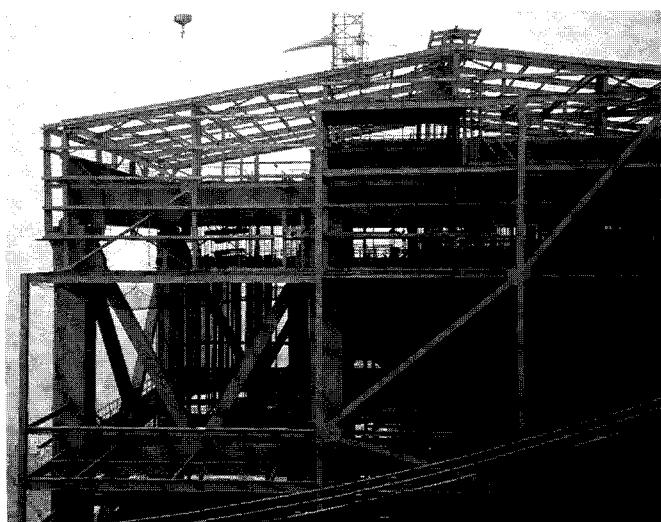
이를 위하여 현재 가장 큰 사회문제로 되어 있는 지구의 환경문제에 대하여 건설산업이 여기에 전향적으로 대처하여 나가기 위한 행동규범을 제시한 것과 국제협력의 관점에서 (재)건설산업교육센터를 통한 외국인의 기술·기능연수생의 유입을 추진하는 것과 풍요하고 매력있는 지역사회의 실현을 위하여 문화와 복지 등의 공익적인 업계활동을 행하는 것 등 사회에 공헌하는 건설산업으로서의 자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사업을 건설산업CC(Corporate Citizenship : 기업의 공의성) 전략사업으로 부르고, 이의 적극적인 전개를 도모한다.

특히 「재생자원에 대한 이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건설산업에 대하여 건설부산물 문제에의 정확한 대응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이에대한 적극적인 활용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하여 건설부산물의 재생이용(Recycle) 추진에 관한 보급, 계발을 행할 것과 건설공사의 시공에 앞서서 건설부산물의 재생이용등과 관련한 계획성의 작성을 철저히 하는 것 및 Manifest System(건설폐

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의 한 방법임)의 적용범위의 검토 등 적정 처리추진을 위한 조사·연구를 함으로써 발생량의 억제, 리사이클의 추진, 적정처리의 추진을 도모하도록 한다.

「재생자원에 대한 이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건설사업에 대하여 건설부산물 문제에의 정확한 대응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이에대한 적극적인 활용필요성이 있다.



## 제2차 건설산업의 구조개선계획(중점과제, 추진사업 및 내용)

중점과제	추진사업	사업내용
1. 고용근로조건 의 개선과 인 재의 확보·육 성	(1) 고용근로조건 개선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설산업에 있어서의 근로시간단축추진요강에 의거한 근로시간단축의 추진</li> <li>임금대장정비추진의 캠페인 등의 실시</li> <li>현장환경개선사업의 실시</li> <li>직용화, 상용화, 월급제의 도입촉진</li> <li>사람을 소중히 하는 기업을 평가하는 제도의 정비</li> </ul>
	(2) 종합적인 인재 확보 육성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젊은층 건설종사자 취업촉진협의회의 활용</li> <li>인재육성 계획의 작성</li> <li>전문공사업자의 책임시공체제의 확립을 위한 연수의 실시, 민간자격창설의 촉진</li> <li>교육기관관의 연대강화</li> <li>기간적 건설근로자의 사회적 평가제도의 창설</li> </ul>

중점과제	추진사업	사업내용
2. 생산성의 향상	(3) 경영기반 강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종별 경영개선지침의 작성</li> <li>• 재무진단·지도의 실시</li> <li>• 경영자 등 연수의 실시</li> <li>• OA기기의 도입·활용에 의한 경영능력의 향상</li> <li>• 사업협동조합 등의 활용</li> </ul>
	(4) 생산공정 개선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정관리 등에 관한 매뉴얼의 작성</li> <li>• 공동개발 등의 지원, 세제의 활용·확충</li> <li>• 기계화, 공장생산화 등에 관한 정보제공의 총괄</li> <li>• 전천후형 공사현장의 실현</li> </ul>
	(5) 건설산업정보 네트워크비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래 데이터의 온라인교환의 보급</li> <li>• 지역에 있어서의 정보화의 추진</li> </ul>
3. 건설생산시스 템에서의 합리 화의 추진	(6) 건설생산시스 템 합리화추진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체결적정화지침의 책정, 책임시공범위의 명확화</li> <li>• 시공체제대장정비의 촉진</li> <li>• 총합공사업자에 의한 전문공사업자의 능력평가·선정의 기본방침에 관한 룰 의 제정</li> <li>• 건설근로자의 고용근로조건의 개선 및 기술·기능의 향상에 관련한 역할분담 에 관한 룰의 제정</li> </ul>
4. 불량·부적격 업자의 배제	(7) 건설업법운용 등 강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정건설업 감리기술자 자격자증제도 등의 철저</li> <li>• 일괄하도급 금지의 철저</li> <li>• 하도급계약에 있어서의 대금지불의 적정화의 철저</li> <li>• 독점금지법 등의 준수지도</li> <li>• 폭력단 배제의 더한층의 철저</li> </ul>
	(8) 공동기업체 적정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발주기관에 있어서의 공동기업체의 적정한 운용을 위한 공동기업체운용 준칙의 정착</li> <li>• 공동기업체의 적정한 운영을 위한 공동기업체운영지침의 정착</li> </ul>
	(9) 일반소비자를 위한 시장환경 정비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정보, 가격정보 등의 정비·제공</li> <li>• 건설공사에 관한 분쟁의 미연방지 및 원활한 해결을 위한 계발</li> </ul>
5. 건설산업에 있 어서의 안전확 보대책의 강화	(10) 총합적안전대 책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공체제대상의 정비에 의한 주임기술자 등의 배치의 철저</li> <li>• 교육비디오 등을 사용한 건설기능근로자에 대한 교육의 철저</li> <li>• 기술자에 대한 강습의 실시</li> </ul>
6. 건설산업에 대 한 이해의 증 진	(11) 건설산업Ⅱ전 략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스미디어의 활용 등에 의한 건설산업의 PR</li> <li>• 건설산업구조개선추진주간의 설치</li> </ul>
	(12) 건설산업CC전 략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구환경, 국제협력, 문화·복지 등의 면에서의 건설산업의 적극적 공헌</li> </ul>
	(13) 건설부산물 리사이클 촉진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부산물의 리사이클추진에 관한 보급, 계발</li> <li>• 건설부산물의 리사이클 등에 관한 계획서 작성의 철저</li> <li>• Manifest System의 적용범위의 검토 등 적정처리추진을 위한 조사연구</li> </ul>